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일 안내

(등록금 관련 사항)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일에 대하여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복학 또는 제적(자퇴)시 등록금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재무회계팀) : 031-870-3074 또는 031-870-3386

☐ “개강일 ≠ 학기 개시일” 로 진행

-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 : 2020년 3월 16일(월)
-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일 : 2020년 3월 2일(월)

☐ 개강일 및 학기 개시일에 대한 설명

- 개강일 : 성적 등과 관련된 기준일
- 학기 개시일 : 등록금과 관련된 기준일

☐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일 기준 복학시 등록금 추가 납부 금액

학기 개시일 기준 일반휴학 신청일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 금액
3월 2일 ~ 3월 11일	등록금의 추가 납부 없음
3월 12일 ~ 3월 31일	등록금의 1/6 해당액 추가 납부
4월 1일 ~ 4월 30일	등록금의 1/3 해당액 추가 납부
5월 1일 ~ 5월 30일	등록금의 1/2 해당액 추가 납부
5월 31일 이후	등록금 전액 추가 납부

-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 신청 가능
단, 10일 이내 휴학하더라도 휴학 중 제적(자퇴)할 경우 등록금 차감될 수 있음 주의

학기 개시일 기준 일반휴학 신청일	일자안내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 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 10일	3월 11일	등록금의 추가 납부 없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11일 ~ 30일	3월 31일	등록금의 1/6 해당액 추가 납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4월 30일	등록금의 1/3 해당액 추가 납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5월 30일	등록금의 1/2 해당액 추가 납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5월 31일 부터	등록금 전액 추가 납부
※ 복학공제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 해야함 = 복학시 최종 납부 등록금 : 복학공제금 + 차감된 등록금(추가 납부해야하는 등록금)		

- 보통 “개강일 = 학기개시일” 로 운영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개강일이 2주 연기됨(학기 개시일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임)
- 다만, 수업(개강)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강일(3월 16일) 이후 휴학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금 1/6을 뺀 나머지 등록금 5/6이 유지되며, 복학할 때 차감된 1/6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 발생함
- 다만, 학기 개시일 ~ 10일 내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강일이 14일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함
- “학기 중 자퇴” 의 경우에도 “학기 중 휴학 후 복학시 등록금 추가납부” 와 동일한 사유로 등록금 반환의 기준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 유의 요청

-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 : 2020년 3월 16일(월)_2주 연기됨
- 2020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 : 2020년 3월 2일(월)

학기 개시일 기준 자퇴원서 접수일	일자안내	등록금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1일 ~ 30일	3월 31일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4월 30일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5월 30일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5월 31일 부터	반환금 없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개정 202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신한대학교 「등록금 운영규정」 제6조(복학생의 등록금 추가납부)

제9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8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법령에 따른다.